

# PL과 민법

## 과실(過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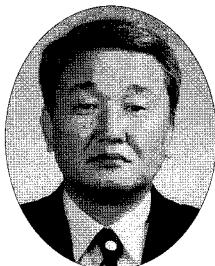
과실(過失)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부주의에 의해 그 방지를 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의행 위만이 범죄로 인정되나, 과실에 의해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처럼 특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범죄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외에는 형벌이 대단히 가볍다. 그 종류로는 크게 구분해서 인식이 없는 과실과 인식이 있는 과실이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일반과실 등이 있다. 사법상과실은 고의와 더불어 책임발생의 요건을 이룬다.

실질적 내용은 형법상의 내용과 같이 생각된다. 종류는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이 있고, 경과실과 중과실 등이 있다. 경과실(輕過失 : culpable vis)은 어떤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응당 조심하여야 할 일을 자칫 방심함으로써 저지른 가벼운 과실을 말한다. 반대로 중과실(重過失 : gross negligence)은 보통 사람이면 그 경우에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주의(注意),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결(缺)한 행위를 지칭한다.

## 주의(注意)

주의(注意)는 원래는 의식의 선택적인 집중상태, 혹은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그후 널리 특정된 자극에 대한 감수성의 높이를 가리키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강한 감각적 자극에 대한 1차적 주의와 의지적 노력에 의한 2차적 주의를 분리하는 수도 있다. 주의에는 고조와 저하가 교체하는 주기적인 파상(波狀)의 리듬이 있으며, 동시에 주의할 수 있는 대상의 수는 대개 7개가 상한(上限)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注意義務)는 사법상,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유무의 판정기준이 된다. 타인의 물건이나 사무를 관리하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무처리상 기울이는 정도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의 2종류가 있



글 · 주태중 전무이사  
가나멀티테크놀로지(주)

다.

형법상의 주의의무란, 예견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상당한 작위나 부작위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계율리 했을 때에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지는 일이다. 민법상으로는 그 행위를 위법행위라 하며, 크게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구분된다. 형법상으로는 범죄성립의 한 요건인데,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법질서 자체이며 개개의 법규는 아니다. 위법성의 검토는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하며, 모든 사회적 악행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 외에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이 제조물책임(PL)법의 배상책임과 관련이 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그리고 책임능력이 있을 것, 행위가 위법일 것인데, 이것이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이다. 또 손해가 발생할 것,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특수한 불법행위로서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친권자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자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등이 있다.

효과로서는, 피해자는 가해자 기타의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이를테면 위자료도 금전으로 배상하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매체를 통한 사죄공고 등이 인정된다.

공해나 교통사고 등이 빈발하는 현대에 이르러 기업의 무과실책임이나 인과관계의 증명완화 등이 문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은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릴 필요없이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일이다. 이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인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도 적어도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즈음 대기업의 출현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또 공해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정해 하려는 사조가 나타나 입법에서도 무과실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국내도 금년 7월 1일부터 PL법 시행

우리나리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여타 선진국과 같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한다. PL법을 이미 실시하는 나라가 이미 30여개국이나 되고, 우리나라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OECD가입국중에서 PL법을 시행하는 마지막 나라가 된다고 한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합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PL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